

## 『무정』에 나타난 근대법과 ‘정(情)’의 의미

– 총독부 통치체제와 이광수의 법의식의 길향을 중심으로 –

이 행 미 \*

1. 조선의 문명화를 위한 두 개의 규율: 근대법과 도덕준칙
2. 근대법에 대한 양가적 인식: 근대 법치주의 확립과 공동체 도덕의 마비
3. 경찰에 의해 ‘구속된’ 식민지 조선이라는 ‘무정’한 사회
4. 식민지의 법률 비판과 대안으로서의 ‘심법(心法)’
5. 결론을 대신하여

### 1. 조선의 문명화를 위한 두 개의 규율: 근대법과 도덕준칙

이광수는 1910년대 ‘조선의 문명화’를 과제로 주창했던 대표적인 작가이자 지식인이다. 그간의 연구에서 실력양성론으로 요약되는 이광수의 근대 지향성은 한일병합이라는 역사적 현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맥락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 전근대적 가치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 문명을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선함에 따라 식민지화된 현실을 눈감아버리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sup>1)</sup> 반면 이광수의 논리가 제국의 통치담론과 공명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명화된 조선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 공간을 확보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류시현, 2014 「1910년대 이광수의 시대인식과 전망: 「매일신보」 글쓰기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54; 박찬승, 1992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61-165면; 정선태, 2004 「이광수의 「농촌계발」과 「문명조선」의 구상」, 『상허학보』 12; 황종연, 2005 「노블, 청년, 제국: 한국 근대소설의 통국가간(通國家間) 시작」, 『상허학보』 14.

하기 위한 전략적 타협으로 보고서 당시 작가의 횡보와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연구도 있다.<sup>2)</sup>

이와 같은 견해는 이광수의 첫 장편소설이자 한국 근대소설의 출발을 알리는 『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무정』 연구의 핵심에는 문명으로 대변되는 ‘근대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sup> 근대의 여러 특성이 형상화된 면면을 들여다보는 일련의 작업은 『무정』의 근대소설로서의 의미를 공고히 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과 풍요로운 해석의 장은 한국소설사에서 『무정』이라는 소설이 지난 문제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정(情)’은 근대성의 방향과 내용을 살피게 하는 주요 개념으로, 그 의미와 연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적인 연구가 제출되기도 했다. ‘정(情)’은 『무정』 뿐만 아니라 작가의 여러 산문에서도 강조되는 용어이다.<sup>4)</sup> 여기에는 ‘개인의 감정 해방’과<sup>5)</sup> ‘동정(同

2) 최주한, 2014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그리고 『무정』」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106-107면.

3) 『무정』이 지난 근대소설로서의 성취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많다. 김윤식은 인물들이 사제 관계를 형성함에 주목하여 근대 문명을 배우리라는 계몽적 성격에 주목했고(김윤식, 1999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솔, 576-585면), 서영채는 논리와 감정의 세계로 이분화되는 김윤식의 논의를 계승하면서 전통과의 화해라는 구도에서 근대소설로서의 의미와 위상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서영채, 1991 「〈무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근대적 사랑(연애), 진화론 등의 과학 담론, 내면성, 감정의 발견 등 다양한 각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사를 일별하여 그 의미를 평가하는 논문이 제출되기도 했다(최주한, 2014 「번역된 (탈)근대론’으로서의 『무정』연구사」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432-451면). 또한 최근에는 『무정』에 나타난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착목한 연구 또한 제출되었다(방민호, 2017 「『문학이란 하오』와 『무정』, 그 논리구조와 한국 문학의 근대 이행」 『춘원연구학보』 5; 이경재, 2014 「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근대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54).

4) 이광수의 정육론의 시초라 할 수 있는 「今日我韓青年과情育」(1910.2 『대한홍학보』)에서 ‘정(情)’은 단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개인의 감정 해방’과 ‘감정교육’의 두 차원이 공존한다(45-47면). 한편 이광수가 사용한 ‘동정(同情)’이란 개념에는 전통 윤리와 근대적 가치의 갈등과 결합이 내포되어 있다(72-75면). 손유경, 2008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5) 개인의 감정을 해방하는 ‘정’을 강조하면서도 논자에 따라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 정병설은 고전문학과의 연속과 단절을 주밀하게 고찰하면서 유교 사상에 의해 억압되었던 감정과 욕망을 육성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다면(정병설, 2011 「『무정(無情)』의 근대성과 정육(情育)」 『한국문화』 54, 244면), 하타노 세츠코는 다카야마 초규의 ‘본능’에

情)과 같은 도덕 감정<sup>6)</sup>의 맥락이 모두 내재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좀 더 주목하는가에 따라 논의가 나뉜다. 양자는 모두 이와 같은 감정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표로 나아가며, 개인의 자발성 회복이 사회 원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sup>7)</sup> 특히 후자의 경향에 속하는 연구는 ‘정’ 담론의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광수의 계몽 담론의 의미를 해명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그러나 『무정』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삼랑진 수해 장면의 해석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여전히 그 의견이 분분하다. 형식을 비롯한 인물이 민족 구성원을 계몽해야 할 타자로서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민족 통합과 연대의 감정’으로 끌어안느냐로 양분되는 논점은 ‘동정’이란 개념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상이한 시각에서 제출된 해석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반된 해석은 ‘동정’이 지난 정서적 교류 차원에 국한하여 그 의미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정’이 도덕 감정으로서 일종의 규율로 기능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법’과 비슷한 위상을 지닌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이다.<sup>8)</sup> 이러한 맥락에서 ‘동정’의 의미와 함께 살펴봐야

---

대한 시각에서 영향을 받아 낭만적 성격을 떤다고 보았다[하타노 세츠코(최주한 옮김), 2008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117-121면]. 이 두 연구는 ‘정’의 사상적 원천 및 배경을 구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그밖에도 ‘사랑’과 ‘열정’과 같은 개인의 감정에 주목하는 연구 또한 이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6) 『무정』에 나타난 ‘동정’의 의미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논자는 김성연, 김현주, 박숙자가 있다. 그중 김현주가 민족 구성의 원리로서 ‘동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김현주, 2005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175-193면), 김성연과 박숙자는 ‘동정’이라는 도덕 감정이 지난 ‘거리’에 좀 더 주목했다. 그중 박숙자는 도덕 감정을 적극적인 윤리적 감정으로 해석하는 선행 연구의 주된 경향을 비판하면서, ‘동정’이라는 감정이 부상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공감’이라는 감정의 정치성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고 논하고 있기도 하다(김성연, 2002 「한국 근대 문학과 同情의 계보: 이광수에서 『창조』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숙자, 2011 「근대국가의 파토스, ‘공감’의 (불)가능: 『검둥의 설움』에서 『무정』까지」 『서강인문논총』 32).

7) 손유경, 앞의 책, 46면.

8) 개인적 도덕 원리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고양되는 문제는 이광수의 ‘동정’ 담론에서 함께 논의되는 애덤 스미스의 견해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도덕감정론』의 전체적인 논지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이와 같은 감정의 문제는 결국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유

하는 것은 계몽 청년들의 행위를 도와주는 ‘친절한 경찰’의 존재이다. 여기서 수재민이 된 ‘불쌍한 동포’의 고통을 구제할 방편인 자선음악회는 경찰서장의 허가와 원조라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총독부 통치의 핵심인 경찰제도와 이들의 허가로 대변되는 법치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행위와 감정의 의미는, 그 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봐야만 그 의미를 온전히 규명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결말부에 나타나는 경찰서장의 선의(善意)는 이광수의 계몽 담론의 허구성을 논구하는 척도가 될 정도로 해석의 논점이 분분한 대목이다. 대표적으로는 경찰서장의 행위가 제국의 권위를 승인하는 관점으로 이어진다거나,<sup>9)</sup> 수해라는 재난의 상황과 민족과 언어를 구분하지 않고 소통하는 비현실성에 주목하는 견해를 들 수 있다.<sup>10)</sup> 그런데 『무정』에서 경찰은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점에서, 삼랑진 수해 장면에서의 모습만을 근거로 총독부 통치를 바라보는 이광수의 인식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삼랑진 수해 장면뿐 아니라 서사 전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찰 존재를 살피고 있는 연구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sup>11)</sup>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침투하여 인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당대 권력의 실체였던 경찰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시사적이다. 김철은 경찰의 서사적 재현이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까지도 경찰력에 의해 보호되고 관찰되는 근대 사회의 현실”과 “근대 국가 권력의 실상”을 잘 드러낸다고 강조한다.<sup>12)</sup>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 부여는 『무정』의

지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법’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애덤 스미스(김광수 옮김), 2016 『도덕감정론』, 한길사 참조]. 물론 위에서 언급한 김성연, 김현주, 박숙자, 손유경 등의 논문에서 ‘동정’ 개념은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폭넓게 참조한다. 이들 연구에서 ‘동정’이 공동체 내에서 규범으로 발휘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감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가 주도로 실시된 근대법과 대처 또는 보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측면(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9) 황종연, 앞의 논문, 290면.

10) 하타노 세츠코, 2008 앞의 책, 387-393면.

11) 김철, 2005 「작품해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무정』을 읽는 몇 가지 방법」, 이광수, 『무정』, 문학과지성사, 500-504면; 김철·이경훈·서은주·임진영, 2002 「『무정』의 계보: 『무정』의 정본 확정을 위한 판본의 비교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20, 70-71면.

주제를 ‘서구 근대를 향한 지향’으로 전제하고서 당시 도입된 경찰제도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만 고찰하고 있으며, 현실을 소설화하는 과정에 투영된 작가의 의도를 구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또한 그는 경찰로 대변되는 공권력이 “온화하고 자상하게 그려져 있다”라고도 평가하는데,<sup>13)</sup> 결말부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이 묘사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엄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삼랑진 수해 장면의 경찰의 면모를 소급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이어 ‘경찰제도’와 이를 ‘법률’로서 보증하고자 했던 총독부 통치가 『무정』에 재현되는 맥락과 의미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형상화 이면에 내포된 작가의 ‘법’에 대한 인식과 ‘식민지 법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모색 또한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수의 법사상 또는 법의식을 살펴보는 논문이 있어 주의를 끈다.<sup>14)</sup> 법학 분야에서 제출된 이와 같은 논의는 현실에서의 ‘법률’에 대항하는 ‘법’의 의미를, 도덕, 정의, 평등 등 법의 본질적인 내용이자 근본 가치와 결부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관점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작가의 법 일반에 대한 이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법 행사의 주체인 총독부에 대한 기민한 의식을 밝히는 문제는 다소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와 달리 이 글은 당시 경찰이 식민지 조선의 법률의 실질적인 수행자라는 점에 착안하고자 한다. 작가의 식민 통치하의 법률에 대한 인식, 그와 연계하여 공동체 유지라는 과제 앞에 놓인 규율로서의 도덕과 법의 길향과 공존을 둘러싼 작가의 사유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를 통해 문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근대법에 대한 복잡다단한 작가의 사유를 해명하는 것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문명

12) 김철이 근거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영채가 청량사에서 겁간을 당할 뻔 한 장면과 평양으로 영채를 찾으러 떠날 때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장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김철의 견해와 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 글의 3장과 4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13) 이는 일제 말기 이광수의 대일협력 행적을 소급하여 그 단초를 찾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김철, 2005 앞의 책, 502면.

14) 안준형, 2016 「춘원 이광수의 생애와 법의식」 『연세법학』 28: 최종고, 2008 「춘원과 법: 그의 법경험과 법사상」 『춘원연구학보』 1.

화라는 과제 앞에서 『무정』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작가의 문제의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2. 근대법에 대한 양가적 인식 : 근대 법치주의 확립과 공동체 도덕의 마비

한일병합 이후 ‘조선의 문명화’라는 과제는 서구적 근대의 수용 통로이자 문명화의 모범으로 비춰졌던 일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1910년대에 이르러 청년 지식인으로 부상한 일본 유학생들의 전근대적 관습을 향한 신랄한 비판의 배면에 일본을 향한 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바다. 그중 이광수는 문명개화를 위해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지배 담론을 내면화한 대표적인 인물로 간주되곤 했는데, 제2차 유학 시절(1915.9~1918.9)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실린 다수의 글에서 산견되는 주장은 이를 방증하는 주된 근거가 되었다.<sup>15)</sup> 그러나 작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춘원이 몇 차례 스스로 밝혔던 바인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발표된 글이 ‘검열을 의식 한 산물’이라는 진술은 간과할 수 없다. 작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지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과 표현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한다. 『매일신보』에는 ‘일본’을 ‘내지’ 또는 ‘일본제국’으로 표기하면서도 동시대 『청춘』과 『학지광』 등에 실린 글에서는 조선을 ‘국가’로 바라보는 시각이 병존했다.<sup>16)</sup> 『무정』의 일본어 번역에

15) 이와 같은 이광수의 태도는 1910년대 그가 보여준 진화론적 사유를 통해서도 설명된다. 그 대표적인 글이 「爲先 獸가 되고 然後에 人이 되라」(1917.6 『학지광』)와 같은 글이다. 이 글에서 이광수는 적자생존의 논리를 전제로 하고서 문명개화를 ‘진리’로 주장한다. 이는 작가가 얼마나 진화론적 논리에 경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인데, 이와 다른 논조와 사유의 파편이 담긴 글들도 유사한 시기에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광수의 복잡다단한 사상을 단일하게 설명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일한 사상으로 환원하여 의미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얼마나 공소한 것인지에 대한 반증이다.

16) 예를 들어 『청춘』에 연재된 소설 「어린 벗에게」에서, 주인공 김일련은 조선과 조선 민족에 대한 인식을 뚜렷이 내보인다. 한편 류시현의 논문은 1910년대 지면에 따라 달라지는 이광수의 표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 내포

수록된 역자의 말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이광수는 『무정』을 연재하던 시기를 어떠한 정론(政論), 일본 제국을 향한 날 선 비판 또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불가능했던 때로 명시하면서, 문학적 형식을 빌려 당시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여실히 토로한다.<sup>17)</sup> 이처럼 조선 민중의 계몽의 수단인 언로(言路) 확보를 위해 검열을 의식하며 글 쓰기를 지속했던 춘원의 전략적 태도는, 병합 이후 식민 통치를 향한 그의 태도를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요컨대, 일제의 검열을 피해 행간에 숨겨놓은 현실 인식을 적극적으로 구명함으로써 1910년대를 살아가는 이 광수의 복잡다단한 내면을 온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차 유학 시절에 발표된 『매일신보』의 글은 그 전후 발표된 이광수의 글과의 ‘단절’을 부각하기보다는 ‘연속’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이광수의 대륙방랑시절 쓰인 『대한인정교보』 9, 10, 11호에 수록된 글과, 러시아를 떠난 이후 발표된 글로서 『매일신보』 뿐만 아니라 동시기 다른 잡지에 수록된 글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흥미로운 점은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상이한 지면에 발표된 일련의 글에서 ‘국가 중심으로 재편되는 법치 체계하에서 변화하는 공동체의 일상’에 대한 관심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한말 개화 지식인들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법치주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유길준과 안국선 등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가와 국민을 이해했고, 그밖에도 입헌 국가 수립을 위한 관심은 담론장 내부의 활발한 논의뿐 아니라 헌법에 대한 각종 저술과 교과서 출판을 이끌었다.<sup>18)</sup> 법치

---

된 작가의 정치적 태도를 살피기 위한 중심 자료로 「오도답과기」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글 또한 『매일신보』에 연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을 통해 조선인의 일상을 목도하고도 일제에 의한 지배를 긍정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점을 작가의 한계로 평가하는 것은 필자가 세운 문제의식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 류시현, 앞의 논문 참조.

17) 李光秀, 1929.5.22 「譯者へ一言」 『朝鮮思想通信』, 6면(최주한, 2016 「『무정』 100년의 계보를 읽는다」 『근대서지』 13, 249면에서 재인용).

18)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천부인권’ 관념을 가져와 인민의 권리를 논했고, 안국선은 전제국가와 대비하여 입헌정체를 강조했으며, 최석하는 자유와 인권이 발달한 입헌 문명국

주의 확립에 따라 국가의 조직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헌법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의 열기는 국권 피탈 이후 사그라진다. 독립 국가 건설의 열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과 비례하여 조선 내에서 헌법을 정초하자는 주장을 소리 높여 제기하는 행위는 금지된 것이다.<sup>19)</sup>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병합 이후 법에 대한 관심이 일상생활을 재편하고 규율하는 법률문제로 이동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1910년 대 ‘법’에 대한 이광수의 견해는 ‘문명’과 ‘법치’의 관계를 염두에 둔 전시대 지식인들의 논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지만, 그의 구체적인 관심은 법의 창설이 아닌, ‘법률’이 시행되는 현상을 향해 있었다.<sup>20)</sup> 이광수는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 주체가 일본 제국임을 인지하고서, 그 법률이 행사됨에 따라 공동체의 도덕이 바비되어가는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광수의 비판적 시선은 ‘법’ 자체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 아니라 총독부에 의

---

가에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밖에도 여러 논자들이 헌법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했다. 이러한 지향은 중국과 일본을 경유한 여러 담론의 소개와 번역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논자에 따라 메이지 유신을 통해 헌법을 세우고 주권을 회복한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야 할 모델로 여기기도 했다. 김효전, 2009 『헌법』, 소화, 86-139면.

- 19) 일례로 1909년 4월 9일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두 논설(「自由室主人」, 「憲法總論 序」)에는 현재 대한의 참상의 근본적 원인을 헌법 부재로 보는 판단이 나타난다. 김효전은 이 글의 필자가 가명으로 제시된 것이 공개적으로 헌법 제정을 주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이라고 판단하고, 병합을 목전에 두고서 빼아픈 후회를 성토하는 필자의 심정을 추측하고 있다. 위의 책, 132-133면.
- 20) 이 글에서는 ‘법’과 ‘법률’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법을 구체적인 법률(법안)뿐만 아니라 정의와 인권 등의 ‘가치’가 포함된 보다 상위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 반면, ‘법률’은 주로 법령과 규칙과 같은 실정법의 의미에 국한될 때만 사용한다. 이와 같은 구분은 테리다의 논의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자크 테리다(진태원 옮김), 2004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33-62면]. 한편 쉬피오에 따르면, ‘법률(ioi)’과 ‘법(droit)’의 구분은 로마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전자가 “어떤 법질서의 근거지”(lex)를 가리키며, 후자는 “법질서의 운용 규칙”(ius)을 일컫는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법률’이 ‘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천이자 권리라 할 수 있다[알랭 쉬피오(박재성·배영란 옮김), 2015 『법률적 인간의 출현』, 글항아리, 33-34면]. 두 학자가 규정하는 ‘법’과 ‘법률’이라는 용어는 의미상 정반대이긴 하지만 같은 기준과 맥락을 적용한 구분이다. 우리말에서는 법률이 규율의 실제 법안을 의미하는 데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정법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했다.

해 실시되는 ‘법률’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유’의 가치를 긍정하면서 개인의 인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대법을 옹호했다. 가령 가장의 전횡을 막아 구성원 각각의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들며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대목을 들 수 있다.<sup>21)</sup> 이러한 주장에는 개인의 인권이 법률을 통해 보호될 때 가족 내부에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심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자리한다. 법률은 법에 내포된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지침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글은 법률에 대한 논의를 전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대 법률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가늠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歷史上 國家의 革命을 觀하더라도 佛國이나 英國은 人民이 만져 覺醒해야 主權者에게 憲法을 要求할았거니와 我日本은 主權者되는 天皇께서 率先하사 人民에게 憲法을 授하였나니, 現今 朝鮮家庭의 革命은 正히 此와 類似여야 할 것<sup>22)</sup>

천황이 인민에게 수여한 헌법을 바탕으로 조선 가정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러한 언술은 춘원이 당대 조선 법률 체계가 작동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메이지 헌법에서 ‘천황’은 모든 법률의 집행자이자 통치권을 가진 존재다. 유럽의 입헌제는 인민의 정치적 권리 확장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체제였지만, 일본의 제국헌법은 표면적으로만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고 실상은 강력한 군주주권을 뒷받침해준 제도였다.<sup>23)</sup> 식민지 조선의 법률은 천황

21) 春園生, 『매일신보』 1916.12.14-22 「朝鮮家庭의 改革」. 당대 가족 개혁과 관련하여 법률의 필요성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던 이광수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이행미, 2017 『한국 근대문학과 ‘가족법’적 현실 연구: 1910~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1-59면). 이 논문은 법적 가족으로의 전환되는 현실에서 이광수의 문제의식을 살펴보고 있다. 「朝鮮家庭의 改革」이나 「공화국의 멸망」에서 살펴볼 수 있는 춘원의 법의식,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법률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으며, 그 초점은 ‘가족’의 문제에 두고 있다. 이 글 또한 식민지 조선의 법에 대한 춘원의 인식을 살핀다는 점에서 위의 논문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일상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법률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초점을 달리한다.

22) 春園生, 『매일신보』 1916.12.14 「朝鮮家庭의 改革 (1)」.

23) 박광석, 2007 「‘제국헌법’과 明治天皇」 『일본역사연구』 26, 120-126면.

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조선총독에 의해 ‘제령’의 방식으로 나타났다.<sup>24)</sup> 이는 실질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폭력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할 ‘법률’이 식민지 조선에는 존재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당대 법 구조에 대한 이광수의 문제의식은 『매일신보』가 아닌,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있던 다른 지면을 통해 본격화된다.

『대한인정교보』는 조선의 국경 너머에서 발간되기 때문에 일제의 직접적인 억압과 규제에서 비교적 벗어날 수 있는 매체이다. 이광수는 9, 10, 11호의 집필과 편집을 주도했는데,<sup>25)</sup> 이 잡지에 실린 글에는 식민지화된 조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례로 차별과 배제 속에서 가난과 고통으로 나아갔던 조선인들의 삶을 직시하면서, 그 엄혹함을 견디기 위해서는 국권 회복을 위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쓰기도 했다.<sup>26)</sup> 여기서 ‘계몽주의자’로서의 이광수의 면모는 독립을 향한 의지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허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며, 문명개화와 식민지화된 현실 속에서 모순성을 내비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지도 않는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본국소문〉이라는 기획으로,<sup>27)</sup> 식민 통치가 행해지는 조선 사회의 현실

24) 한상범, 2001 『현대법의 역사와 사상』, 나남출판, 72면. 문준영은 “제국헌법의 천황대권에 관한 규정과 1911년 3월 25일 제정된 법률 제31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 합쳐진 일종의 “계엄령”的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준영, 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436면.

25) 이광수의 『대한인정교보』 참여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최기영은 『대한인정교보』는 9호부터 항일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고, 이광수는 10호부터 참여했다고 본다(최기영, 2004 「1914년 이광수의 러시아 체류와 문필활동」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아카데미, 158면). 반면 최주한은 9호부터 이광수가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9호에는 「농촌계발의견」(1914.3.1)을 비롯하여 춘원이 필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가 수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주한의 논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광수가 본격적으로 편집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사의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주한, 2014 「이광수와 『대한인정교보』 9·10·11호에 대하여」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403-407면.

26) 최주한, 위의 논문, 416-417면.

27) 제1권 3호에서 〈본국통신〉이라는 기획이 연재되기 시작했고, 9호에서부터는 〈본국소문〉으로 개칭되었다.

을 겨냥한 날선 비판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식민 통치의 민낯과 그 과정이 법제 재편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실을 포착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사립학교들은 왜놈의 협박 방해와 경비 곤난과 우리 사롭들이 쏘한 관공립학교에 만 보내기를 죄하함으로 거의 다 들어지고 남아잇는 것은 전문학교에 보성 숭신이오 양정의숙은 왜가 「너희가 법률은 배호아 무엇하나니」하야 돈 뺏았고 학생과 교사를 내어 조출으로 째어지고 (중략) 국어라 함은 왜말을 널음이니 죄선이라는 정말 우리 국어는 덧부치라 한 긴치 아니한 외국말 갖히 녀겨 한 쥬일이면 한 시간 쯤 너코 왜 말 과정은 한 쥬일에 칠팔시간으로 십여시간이며 다른 과정도 말씀도 말씀 왜말로 가라쳐 우리 국어를 멀절시키려 함이오 실업사상 고취라 하면 얼는 듣기에 매오 죄흔 말이 나 그 속살은 우리 사롭으로 다만 농사나 헝고 납도장사나 하급 공업이나 하게 호야 정치 법률 털학 문학 종교 등 인류의 자랑이라 할만한 정신적 학술과 국가문예 사회문예 인류문예 등 크고 고양한 활동은 일절 금하려 함이니 (중략) 그들은 동화 동화 하나 동화는 입으로 하는 사설이오 기실 저희보다 한층 떨어지는 민족을 만들려 함이라<sup>28)</sup> (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공포된 조선교육령은 ‘순종적 신민 양성’을 위한 조선 교육의 제도화를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어 학습과 실업교육 중심인 보통학교 위주로 편제되었고, 조선인의 고등 교육 기회는 줄어들었다.<sup>29)</sup> 인용문에는 조선 민족의 독립을 위한 과제인 실력 양성이 ‘자생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원인으로 왜곡된 교육 제도를 꼽고 있다. 이는 실업 사상의 필요성을 내걸면서 실제로는 정신적 활동을 펼쳐나갈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식민통치의 이면을 간파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대목은 이광수가 조선 식민지화의 원인을 민족 내부로

28) 대한인국민회, 1914.3.1 「본국소문: 교육정황」『대한인정교보』 9, 18-19면(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권업신문, 대한인정교보, 청아신보, 한인신보 (2)』, 598면).

29) 꽉진오에 따르면, 제1차 교육령은 “교육에 대한 제국주의적 계획에 따라 선량하고 충성스런 제국신민의 양성”과 “초등학교 실업교육강화를 통한 일본의 새로운 독점자본체제에 맞추어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숨겨져 있는 식민정책이다. 이러한 목적은 제1차 교육령의 전문 제1장 강령 2조와 3조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꽉진오, 2011 「일제와 조선 교육정책: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 50, 259면.

환원해서 이해했다는 평가를 재고하게끔 한다.

특히 교육제도 개편 중에서 ‘양정의숙’이 보통학교로 격하된 사실에 대한 필자의 진단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가 「너희가 법률은 배호아 무엇호 나냐」”고 하면서 교사와 학생을 내쫓았다는 진술에서 잘 나타나듯, 필자는 일본이 조선인의 법률 공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의도에서 보통학교로 만들었다고 판단한다. 양정의숙은 근대 초기 서양식 법학을 가르쳤던 전문학교 중의 하나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법제를 정비하고 법관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던 흐름 속에서 설립되었다.<sup>30)</sup> 필자는 조선교육령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조선인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조선을 의식적인 법의 불모지로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있다고 진단한다. 이와 같은 본국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다루는 필자의 태도는 비슷한 시기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와 그 내용과 논조에서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양정의숙이 보통학교화 되는 현상을 다룬 1913~1914년에 발표된 기사에는, 법률과 생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국이 변경을 결정했다거나,<sup>31)</sup>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장 엄주익이 실업교육 중심으로 교과를 변경하는 선견지명을 보였다 는 평이 나타난다.<sup>32)</sup> 대체로 시세에 따른 적절하고도 불가피한 변화로 보면서, 이러한 재편이 합리적이거나 진보적인 과정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대한인정교보』에 실린 이 글은 『매일신보』에서 재생산된 식민 담론을 ‘본국 소문’이란 제목 아래 전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저항적 담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대한인정교보』 10호의 <본국소문>에서는, 총독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행사되

30) 1905년 설립된 양정의숙은 법률학과와 경제학과가 있는 전문학교로, 1913년 조선교육령에 따라 폐지된 후 양정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김효전에 따르면, 만국공법과 조약이라는 이름 아래 조선왕조가 속국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법률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법학전문학교의 설립은 민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여겨졌다. 법전의 근대화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법률전문학교에 자문하고자 했고, 양정의숙은 거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효전, 2012 「양정의숙의 법학교육」 『법사학연구』 45.

31) 『매일신보』 1913.9.27 「養正義塾의 變更」.

32) 『매일신보』 1914.2.26 「學校歷訪：養正高等普通學校(工后洞)」.

는 법률과 규칙이 일상의 도덕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된다.

우리나라에는 양심과 도덕이 아주 부패한 악한 현병 순검에게 잡혀가지만 안는 일이면 무슨 것이나 다 훈다 흔니, 이는 넘어 법률과 규칙만 위주하고 사회에 어른이 되어 동포를 도덕 방면으로 지도하는 이를 관리가 천대하고 팝박한 악한 사회 도덕의 권위를 업시킬 죄악이니 그죄는 물어볼것 업시 왜 총독부에 있노이라 우리 예의지인으로 흥여끔 부조와 부부 형제가 인륜에 어그리는 송스를 흥게 흥도록 우리 양심과 도덕을 부패케 한죄가 얼마나 크뇨<sup>33)</sup> (밀줄: 인용자)

위의 글은 직접적으로 총독부가 실시하는 법률과 규칙에 내포된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필자는 예로부터 유지된 양심과 도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총독부’의 행태야말로 조선의 양심과 도덕이 부패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최주한이 지적했듯, 이러한 언술은 도덕성의 타락을 조선 민족의 본질적 문제로 환원시켰다는 평가를 재고하게 한다.<sup>34)</sup>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러시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2차 유학시절에 발표된 글인 「공화국의 멸망」(『학지광』, 1915.5)과 「대구에서」(『매일신보』, 1916.9.22~23)에서 규칙과 법률과 대비되는 도덕의 문제를 살펴본다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특히 「공화국의 멸망」은 인용문에 나타난 “예의지인”과 본래 가지고 있던 인륜을 거스르지 않는 “양심과 도덕”의 정체를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거의 道德心이 다 업다 하리만큼 腐敗하고 社會에 有德한 人土(업기 도 하거니와 惑 잇더라도)를 尊敬할 줄 모르어 그의 忠告를 두렵어 한다든가 그의 德을 欽慕하는 맘이 업고, 오죽 警官에게 붓들리어 가지만 아니 하면 올흔 일어나니 하게 되니, 만일 警官의 눈만 벗어날 수 있으면 무슨 罪과 아모 惡이라도 못할 것이 업게 될지라. 그리 되면 사람마다에 警官 하나씩을 달아도 오히려 쓸어나는 罪惡을 防遏치 못할지니, 그 社會가 엇지 寒心하지 아니 하리오. 대개 法令은 消極的이라 이

33) 대한인국민회, 1914.5.1 「본국소문」, 『대한인정교보』, 10·18면(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권업신문, 대한인정교보, 청아신보, 한인신보 (2)』, 616면).

34) 최주한, 2014 앞의 논문, 424면.

의 罪惡을 犯한 뒤에 이를 다슬이는 能力이 있을 뿐이니, 애초에 罪를 犯치 못하게 하는 힘은 오죽 道德的 感化에 있고 道德的 感化는 民間 有德人士의 尊敬에 있겠지라. 혹 낡은 道德이 이의 깨어지고 새 道德이 서지 못함을 憎歎하는 곳도 있으나 且今 우리 狀態는 道德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道德의 根源인 道義心이 어쩐 原因으로 癪癥함이니, 아마 東西古今에 文明國 치고 오늘날 우리처럼 無道德 狀態에 있는 亂民은 다시 차자보기 어렵으리로다.<sup>35)</sup>

위 글에서 이광수는 ‘법령(法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 법령은 죄를 저지른 후에 처벌을 통한 제재만이 가능할 뿐, 개인의 내면에 죄의식을 유발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데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警官에게 봇들리어 있지만 아니 하면 올흔 일”이라는 인술은 법을 집행하는 경관이 지닌 강한 권력을 부정적으로 현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옳고 그름을 준별하는 일이 모두에게 공유된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한 개인, 그것도 공권력을 대변하는 이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은 개인이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통해 행위 할 가능성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다. “道義의 根源인 道義心”이 부재한 사회는 근대적인 법률 체제 내 마련된 금지와 위반의 세목들이 공동체의 여러 사안을 규제하게 되면서 점점 사라져 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의 말미에서 “皮相의 文明에 中毒하야 이 오래고 情들은 共和國을 깨틀이었도다”라는<sup>36)</sup> 작가의 한탄은, 근대적 법률, 특히 경관의 무소부지 권리에 의해 일상이 규율되게끔 하는 법률 조항들을 향해 있다. 가족, 친척, 이웃이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공유했던 공동체 내부의 보편적 가치가 소멸하고, 각각의 개인들은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된다. 요컨대, 구성원들 사이에 유지되던 무형적인 도덕심이라는 불문율적인 보편적 가치는 소멸하고, 각 개인은 자기의 이해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법령과 규칙에 따라 움직이며, 타인과 공동의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잃게 되는 것이다.<sup>37)</sup> 이런 점에서 이 글에 나타난 일상생활의 풍경을 변화시키는 법률과 이를 행사하는 경관에 대한

35) 孤舟, 1915.5 「공화국의 멸망」 『학지광』 5, 11면(인용문의 강조점은 원문을 따랐으며, 추가로 밑줄을 친 부분은 인용자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36) 위의 글, 11면.

37) 이행미, 앞의 논문, 57면.

비판적 태도는 『대한인정교보』에서 보여준 총독부하에서의 법 집행에 대한 날 선 비판적 인식과 연속선상에 놓인다. 당국의 엄혹한 감시와 혹독한 검열 속에서 유학생 이광수는 완곡한 표현 뒤에 목소리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38)</sup>

한편 이와 같은 법제에 대한 비판은 사라져 버린 공동체의 도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흥미로운 점은 근대적 법률에 의해 ‘멸망’에 이르게 된 공화국에도 별도의 조목은 없지만 만사에 적용되는 “憲法의 精神”이<sup>39)</sup> 있다는 대목이다. 작가는 이를 풀어서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내용을 관통하는 것은 부모, 이웃을 비롯하여 타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즉 ‘정(情)’에 기반을 둔 ‘도덕심’이다. 세부적으로 행위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부재하기에, 모든 행위를 총망라하는 엄정한 불문율로 존재하는 이와 같은 ‘헌법의 정신’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끔 하는 내면적 규준을 세우게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긍정적 인식은 작가의 ‘정육론’에서도 발견된다. 「금일 아한 청년과 정육」(1910)에서 ‘정(情)’은 지식, 권위, 도덕을 비롯한 모든 것들에 우선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부모에게는 “孝”로, 이웃에게는 “同情”으로 나타나며, 사회, 국가, 세계인류를 “愛”할 수 있는 “心法”으로 기능한다.<sup>40)</sup> 여기서 제시된 ‘심법’으로서의 ‘정(情)’의 기능은 그 내용상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공화국의 멸망」에 나타난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정신’과 상통한다.<sup>41)</sup> 또한 ‘헌법’

38) 「공화국의 멸망」이 포함된 『학지광』 5호도 암수되었다. 하타노 세츠코, 2011 『일본 유학생 작가 연구』, 소명출판, 85면.

39) 孤舟, 앞의 글, 10면.

40) 李寶鏡, 1910.2 「今日 我韓青年과 情育」 『大韓興學報』 10[이광수(최주한·하타노 세츠코 엮음), 2015 『이광수 초기 문장집 (I)』, 소나무, 61면].

41) 이러한 ‘양심’과 ‘도덕’이 과거부터 내려온다는 이유로 이광수가 비판했던 성리학 중심의 전제적 성격을 떤 유교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화국의 멸망」에 나타난 ‘헌법(불문율)’은 인륜에 토대를 둔 ‘정(情)’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동시에 스스로 노동하고 생산한 것에 만족하는 ‘근면’의 가치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 때 ‘정’의 요소는 스스로 내재된 도덕심을 확장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서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장려한다. 이는 「모범촌」(1914.6.1 『대한인정교보』 11)과 이후 발표된 일련의 농촌계발의 글에 나타난 춘중의 문명한 사상을 전파하고자 했던 동희의 규칙과 활동의 내용과 상응하기도 한다. 이는 이광수에게 있어 일찍부터 개인의 도덕심 회복 문제가 문명화의 지향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화국의 멸망」에서 이광수가 안타까워하는 과거의 도덕은 벼려야 한다거나 조사(弔詞)의 대상으로 전적으로 치환

이라는 어휘에서 짐작할 수 있듯, 각 개인의 도덕심 회복 문제는 결국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나라(또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총독부 하 법률이 공동체의 도덕을 마비시키는 현실 속에서 법률 개선을 주도적으로 외칠 수 없는 조선인의 상황은 그 대안이 되는 사회의 도덕과 정신이 응축된 불문율을 그리워하게 한다. 국가의 법률에 부재한 이와 같은 정신의 함양은 궁극적으로 “주권자”로서 “나라를 회복하리라는 생각”을 가슴 속에 간직하는 구국의 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sup>42)</sup>

이처럼 이광수는 근대법이 지닌 긍정적 가치이기도 한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법치주의의 확립과 동시에 더욱 상실하게 만들었던 총독부의 통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탐색한 도덕의 추구는 개인 스스로 준칙을 세우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형성되는 법치 체계로 포섭되지 않고 이를 넘어선 내면의 자율성을 모색하게 한다. 이와 같은 작가의 법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시기 발표된 장편 『무정』에서의 ‘정(情)’의 의미를 법제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환기한다.

### 3. 경찰에 ‘구속된’ 식민지 조선이라는 ‘무정’한 사회

『무정』의 핵심 갈등은 세 인물의 삼각관계에서 빚어지는 애정에서 비롯되지만, 인물의 전사(前事)와 내면의 서술 비중을 고려할 때 형식과 영채의 관계가 주축이 된다.<sup>43)</sup> 삼각 구도의 중심에 있는 형식이 영채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는 과정은 주로 영채가 처한 상황이 변화하면서 촉발된 그의 심경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형식이 혼인을 주저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표충 사건은 영채가 기생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강간을 당해 정조를 잃게 되

---

하여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42) 이는 「모범촌」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되는, 문명한 사상을 획득하더라도 “오직 하나 면 치 못할 것은 망국민의 천대를 받는 슬픔”이라는 대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14.6.1 「모범촌」 『대한인정교보』 11(이광수, 2015 앞의 책, 277면).

43) 서영채, 앞의 논문, 11면.

는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sup>44)</sup> 그런데 병욱을 만나 ‘새사람’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영채의 삶의 굴곡을 대변하는 이 두 사건은, 모두 ‘죄’라는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인물의 ‘죄’를 결정하는 기준은 총독부에 의해 규정된 법령체계 속에 존재하며, 그 죄를 판결하는 이는 대체로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경찰세력으로 나타난다. 이 두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전개되는 과정은 공통적으로 일상에 틈입된 법률 체계 문제를 다루면서 전개되는 것이다.

『무정』의 시대적 배경은 영채의 전사(前事)를 포함하면 개화기에서부터 1910년대 중후반에 이른다. 소설에서 포괄하는 이와 같은 시간은 헌병경찰 세력이 점차 확대되고 정착되어가던 때와 맞물린다. 당시 ‘헌병’은 일제의 식민 지배의 엄혹함을 상징하는, 한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들은 1896년 한반도에 주재하기 시작한 이후, 1906년 2월 통감부 개설과 동시에 제도적인 정착을 이루었고, 1910년 한일병합을 기점으로 그 기능이 더욱 확장되어 광범위하면서도 막강한 직무 권한을 부여받았다.<sup>45)</sup> 전국에 조직적으로 배치된 헌병경찰은 조선 민중의 일상을 국가권력의 관리와 규제 아래 놓이게 하는 첨병 역할을 했다. 근대적 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이 없을 경우 경찰이 검사와 판사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는데,<sup>46)</sup> 이들은 치안업무라는 명분으로 범죄에 대한 즉결처분의 권한을 지녔다.<sup>47)</sup> 이처럼 경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죄를 물을 수 있었고, 그 권한은 조선총독에 의해 발표된 제령으로 보증되었다.<sup>48)</sup> 이광수는 『무정』에서 이와 같은 경찰의 특성을 재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특히 영채가 기생이 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된, 박진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아 투옥된 원인을 둘러싼 사건은 이러한 경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4) 영채가 실제로 정조를 유린당해 처녀성을 상실했는지는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식은 영채의 순결이 더럽혀진 상태로 ‘생각’한다. 하타노 세츠코, 2008 앞의 책, 244-245면.

45) 허남오, 1998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232-240면.

46) 이상열, 2007 「일제 식민지 시대 하에서의 한국 경찰사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7, 82면.

47) 경찰은 재판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당시 재판소가 있는 지역은 대략 1/4에 불과했다. 위의 논문, 84-85면.

48) 위의 논문, 85-86면.

그해가을에 거기서 십여리 되는 어느 부자집에 강도가 들어 쥬인의 엽구리를 칼로 찌르고 현금과 빅여원을 류달한 손건이 일어났다 그강도는 박진스집 사랑에 잇는 홍모라 조그의 은인 박진스의 곤고함을 보다 못 헤아려 처음에는 좀 위협이나 했고 돈을 뜯어올 초로 갓더니 하도 쥬인이 무례 했고 또 헌병단에 고소 했겠노라 했기로 죽이고 왓노라 했고 돈과 빅원을 뉘어놓는다 박진스는 쌈싸늘나며

「이사람아 웨이러 혼일을 헤였는가 부즈런히 일 헤는 자에게 하늘이 먹고 입을 것을 주느니……아무 웨이러 혼일을 헤았는가」하고 돈을 도로 가지고 가서 즉시 사죄를 했고 오라 했더니 중도에서 포박을 당하고 강도 살인교사급 공범 혐의로 박진스의 삼부자도 그날 아침으로 포박을 당하고 있다 (중략)

두어 달 후에 홍모와 박진스는 정역 종신 박진스의 아들 형례는 정역 십오년 기타는 혹 칠년 혹 오년의 정역의 선고를 밖고 평양 감옥에 드려갔다<sup>49)</sup>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박진사가 정역을 살게 된 이유는 그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홍 모라는 인물이 저지른 도적질과 살인의 공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홍 모는 학교 경영이 어려워진 박진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돈을 조금 훔치려다가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홍 모의 행위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이다. 강도와 살인이라는 명백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의 행위 동기가 은인을 위하고자 했던 선의(善意)라는 사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간다. 더구나 조금의 위협을 가하려고 했을 뿐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애초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의 성정이 악하지 않음을 환기한다.

이러한 파국적 사태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자 위치에 놓인 주인에게서 찾고 있는 점은 자못 중요하다. 주인의 ‘무례함’과 ‘헌병대에 고소’하겠다는 발언이 우발적 살인의 직접적 동기로 제시된다. 도적질을 하는 마당에 예의 운운하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부각되는 것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헌병대’로 넘기겠다는 주인의 발화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 장에서 살펴본 인륜과 양심과 도덕을 지닌 ‘예의지인’을 강조했던 춘원의 산문을 상기시킨다.<sup>50)</sup> 다시 말해, 홍 모의 범죄 동기는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을 부패하게 한 총독부의 죄를

49) 春園, 『매일신보』 1917.1.9. 「無情」 5(추후 인용에서는 본문에 회차만 표기하도록 한다).

50) 이때 ‘예의’는 『대한인정교보』의 「본국소문」과 『학지광』의 「공화국의 멸망」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전자는 총독부의 행태가 ‘예의지인’으로서의 면모를 사라지게 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 글의 2장을 참조.

지탄하는 산문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 모의 극 단적 선택에는 범죄를 저지를 동기나 과정은 무시되고 자의적으로 죄를 부과하는 현병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담겨 있다. 또한 살해된 주인은 현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사람에 대한 동정과 예의가 사라진 이로 그려진다. 이처럼 박진사의 투옥을 둘러싼 사건의 형상화에는 현병 경찰로 대표되는 총독부 통치가 오히려 ‘범죄’를 줄이기는커녕 양산하며, 사람들의 도덕성을 타락시켰다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담겨있다. 이후 박진사는 재판을 받고서도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죽게 된다. 그의 죽음은 법과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식민지의 사법제도 내에서의 재판의 면면을 자명하게 드러낸다. 추후 서사 내에서 박진사의 수감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억울함’과 ‘참혹함’이 결합된 사건으로 회상되면서 이 사건에 담긴 이러한 맥락은 더욱 강조된다.<sup>51)</sup>

그렇다면 아무런 죄가 없는 ‘박진사’가 하필 총독부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현 병경찰’에게 잡혀 ‘평양감옥’에 수감된 후 죽게 되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 박진사는 전통문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근대 문명의 위력을 절감하여 개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이때 박진사를 주축으로 전개된 운동의 장소가 평안도 안주라는 점은, 이 운동을 서북지역에서 행해진 신문화운동과 겹쳐 읽게끔 한다. 이에 대해 정주아는 박진사의 투옥을 1909년 105인 사건과 중첩하여 읽는 흥미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신민회의 결성으로 현실 변혁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던 서북지방의 이상주의적 공동체의 지향은 105인 사건과 한일강제병합으로 인해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sup>52)</sup> 춘원은 남강 이승훈과 함께 용동에서 이상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105인 사건으로 인해 남강이 대구 형무소에 구속되자 학교 책임자가 된 후에는 더욱 주도적으로 활동에 전념하였다.<sup>53)</sup>

51) 6회에서 형식은 영채로부터 은사의 죽음을 둘러싼 사연을 듣고서, 박진사의 징역 선고를 “애매한 죄”로 간주한다. 64화에서 형식은 박선생의 죽음을 “참혹한 희생”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52) 이와 관련하여 정주아는 박진사의 수감이 당시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105인 사건의 은유로 기능한다고 흥미로운 분석을 하기도 했다. 정주아, 2014 『서북문학과 로컬리티: 이상주의와 공동체의 언어』, 소명출판, 81-83면.

53) 춘원은 남강의 초청으로 오산학교 교사가 되고(1910.3), 남강의 이상춘 운동에 동참하며 새마을운동의 선봉에 섰다(1910.10). 105인 사건으로 남강이 형무소에 구속되고 춘원이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신문화운동이 이광수의 여러 글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그의 용동체험은 농촌의 문명화를 골자로 하는 이상촌운동에 대한 강조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sup>54)</sup> 특히 「농촌계발」(『매일신보』, 1916.11.26~1917.2.18)은 『무정』의 연재 초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두 글에 나타난 작가의 계몽의식을 연계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제출되기도 했다.<sup>55)</sup> 문제는 이 두 운동이 계몽과 문명이라는 핵심 가치로 수렴되면서도 운동의 결말이 성공과 실패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이상촌 운동을 다룬 모든 글이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끝을 맺는 것과 달리 박진사의 운동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다. 따라서 다른 글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무정』에만 등장하는, 그 원인이 되는 일제하 공권력의 무자비함은 거듭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원조와 지원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자생적인 구국운동으로서의 문명화 운동이 가능하지 않거나 어렵다는 당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박진사의 포박과 투옥 시점이 한일병합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던 1900년대 후반부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방증된다.<sup>56)</sup> 대한제국

---

학교 책임자가 되었다(1911.1). 이때 학교일과 용동회장을 맡아 이상촌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윤홍로, 2010 「춘원의 용동체험과 글짓기 과정」 『춘원연구학보』 3, 15면.

54) 『대한인정교보』에 수록된 「농촌계발의견」(9, 1914.3.1)과 「모범촌」(11, 1914.6.1)이 민족 독립을 위한 문명화를 주장한다면, 「용동」(『학지광』 8, 1916.3)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명국'에 도달했다는 내용으로 갈무리된다. 한편 「농촌계발」(『매일신보』 1916.11.26-1917.2.18)에서는 산업과 문화 양반명의 발달을 통해 물질과 정신 양 차원에서의 문명화를 주장한다.

55) 김효진과 김영민이 구세대와의 결별을 통한 청년세대의 계몽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 글은 '결별'이 아니라 '연속'의 차원에 주목하려고 한다. 김효진·김영민, 2009 「계몽 운동 주체의 변화와 "청년"의 구상: 이광수의 「용동」, 「농촌계발」, 「무정」을 중심으로」 『사이』 7.

56) 이와 같은 추측은 작품 내에 나타난 시대적 표기를 통해 가능하다. 『무정』에는 동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만큼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 표지들이 많이 등장한다. 약간의 오차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건이 일어난 해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5회에서 박진사가 포박될 때 형식의 나이는 16살로, 그 시점은 가을로 나타나며 두어 달 후 박진사의 정역이 선고된다. 그에 따라 형식은 다시 표류의 길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형식의 나이는 16살 또는 17살이 된다. 영채와 형식이 다시 만난 것은 7-8년만(7년만이라는 정보가 더 많다)이라고 나오는데, 그 시점은 1916년이다. 이에 따라 계산을 해 보면 박진사가 포박되는 시점은 대략 1907~1910년 사이로 추정된다. 한편 6화에서 영채의 진술로 박진사가 이태 만에 옥에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50화에는 영채가

의 국권의 피탈된 해는 1910년으로, 그 과정은 당시 막강했던 일본 군벌 세력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강화된 한병경찰의 존재이며, 이들은 군사, 정치, 사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의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sup>57)</sup> 요컨대, 박진사의 투옥과 수감,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점점 엄혹해지는 일제의 통치 상황을 암시한다. 또한 「농촌계발」에서 조선인의 정신적 생활의 부재와 도덕적 타락상이 전적인 비판 대상이 되었던 것과 달리, 『무정』에서는 그 타락의 원인을 일제의 통치체제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인정교보』의 산문의 논조가 유지된다. 그렇기에 이 운동은 ‘과거’로 ‘조상(弔喪)’되지만 그것은 진보를 위해 버려야 할 과거가 아니라, 식민지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문명화의 한 방향에 대한 비탄 어린 애도를 담고 있다. 서양과 일본을 모범으로 삼아 문명을 배워야겠다는 의지를 보다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데에는 조선의 식민지화된 현실에서 ‘가능한’ 계몽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태협은 조선 총독부의 통치를 낙관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 무분별한 진보주의자의 태도로 이 시대 이광수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근거가 된다. 요컨대 박진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은 일제의 지배가 점차 엄혹해지고 식민지화되어가는 시대상을 환기하는 일종의 은유로 기능하는 동시에 조선의 문명화라는 과제가 식민 통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 활로를 모색해야 했던 작가의 고민이 투영된 사건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경찰력에 둘러싸인 조선 사회의 모습은, 전술한 죄를 집행하는 강압적인 역할뿐만 당시 경찰의 주요한 임무였던 심인(尋人)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으로도 그려진다.<sup>58)</sup> 이는 형식과 노파가 영채를 찾기 위해 간 평양에서의 사건들을 통해 나타난다. 형식은 영채가 대동강에 투신할까 염려되어 노파와 함께 평양으로 떠난다. 출발하기 전 형식은 전 보를 쳐 경찰에게 영채를 보호해 달라

---

기생이 된 것이 13살이며 그때 부친이 죽었다고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시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지표는 통일적이진 않은데, 그럼에도 박진사의 포박, 수감, 옥사의 과정이 1910년 한일병합이 다가오고 있는 1900년대 후반의 시간임을 알 수 있다.

57) 이윤정, 2015 『한국경찰사: 근현대편』, 소명출판, 91-99면.

58) 김철, 2005 앞의 책, 501면.

고 부탁한다. 하지만 전보에 인상착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인지 순사는 정거장에 나가보았지만 영채를 찾지 못한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부각되는 이미지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경찰이 아니라 ‘민중의 일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경찰’이라는 데 있다. 전자의 역할이 영채의 구제라는 핵심 플롯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결국 영채를 찾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는 데 그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간의 재현임에도 작가는 반복적인 장면화를 시도하여 일정한 의미를 전달한다.

영채를 찾기 위해 평양역에 내린 형식과 노파가 출구를 나서는데 그 자리에서 있던 순사가 이들을 훌끗 쳐다본다.<sup>59)</sup> 이 대목에서 서술자는 열차에서 내려 개찰구로 나오는 온갖 군상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풍경에는 순사의 이와 같은 모습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순사의 시선은 형식과 노파를 세워 검문하는 사건으로 발전되거나, 추후 어떠한 사건의 복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서사 전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 한 문장을 삽입하게 된 의도는 너무나 자명하다. 이 문장은 오직 당시 경찰 조직에 의해 감시와 통제가 자행되던 현실을 환기하는 기능으로 쓰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제의 억압적인 면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형식이 평양경찰서로 들어서서도 나타난다.

형식은 아직도 조선땅에서 경찰서에 와본 적이 업셨다 일즉동경에서 엇던 경찰서에 불려가 차를 드시고 담비를 피우면서 서당과 말호 약본 적은 잇셨스나 인민이 관청에 오는 즈 격으로 경찰서에 와본 적은 업셨다 그는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어 아라사 경찰서의 모양을 상상 훌륭이 업셨다 형식은 얼마 콤불쾌한 성각을 품으면서 모조를 벗고 「엿쥬어 불말 삼이 업습니다」 흐고 얼굴을 붉혔다 로파는 형식의 것 해서 무서움과 괴로움으로 치를 뻔다 (57회) (밀줄: 인용자)

인용문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형식이 동경에 있을 때 경찰서에 ‘불려갔다

59) “두사람이 탄 열차는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중략) 형식과 로파는 출구(出口)를 나섰다. 직혀 섯던 순사가 훌긋 두사람의 뒤를 본다. 형식과 로파는 인력거에 올랐다. 두 인력거는 여러 인력거와 압둘거리니 뒤에서 거니 쪘족비를 지나서 아직 던등이 반짝반짝하는 평양시가로 드러간다. 안기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커온다” (55회)

는’ 사실이다.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서장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온건한 표현의 이면에는 그가 경찰서에 어떤 혐의로 인해 출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함축되어 있다. 소설 내에서 동경 유학생으로서의 형식의 면모는 그가 당시 접하거나 배웠던 학문이나 사상의 조류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형식이 유학생 시절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서술된 대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유학생 시절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이와 같은 서술은 조선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온한 인물로 여겨졌던 당대 현실을 연상 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런데 동경에서 경찰서에 불려갔던 형식의 경험을 이광수의 체험이 투영된 재현임을 고려하여 읽을 때 이 장면이 내포하는 의미는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다. 동경에서 경찰서에 불려간 이 일화는 작가의 중학 시절 대한소년회에서 발간한 잡지인 『신한자유종』이 압수되었던 경험을 소설적으로 변용한 것이다.<sup>60)</sup> 이 단체는 항일적 성격을 띤 만큼 잡지에 수록된 글 또한 “비분강개한 애국적인” 주제를 담고 있었다. 그와 같은 활동 때문에 이광수는 경시청에 불려가 일본 관헌에게 혼이 났고, 그 경험은 이광수로 하여금 “우리의 전도가 일본 관헌의 주의 밑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면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sup>61)</sup>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표면상으로 부각되진 않지만 형식이 경찰서에 들어서는 이 장면은 조선인을 탄압하는 식민지 통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접근은 형식이 경찰서에 들어올 때 톨스토이의 『부활』에서의 아라서 경찰서를 상상하며 불쾌함을 떠올린다는 대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이광수가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62)</sup> 그중 『부

60) 『신한자유종』과 관련된 이광수의 초기 활동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조. 장신·황호덕, 2012 「『신한자유종』(1910) 검열 기록의 성격과 이광수의 초기 활동: 안중근 정국과 한일병합 전후의 유학생 사회」 『근대서지』 5.

61) 이와 같은 작가의 체험과 당대의 심정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는 자전적 소설 『나의 고백』이다. 최주한에 따르면 대한소년회는 1908년쯤 조직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며, 경시청에 불려간 이후 이광수는 주의 인물이 되었다. 최주한, 2014 「중학시절과 오산시절 전후의 이광수」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46-47면.

62) 김진영, 2014 「삶의 텍스트, 소설의 텍스트: 이광수와 톨스토이」 『비교한국학』 22: 김윤

활』은 좋아하는 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도 이광수가 애독서로 뽑은 소설이기도 하다.<sup>63)</sup> 따라서 작가의 목소리를 일정 정도 공유하고 대변하는 형식이 하필 ‘경찰’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불쾌감’이라는 정서를 동반하게 된 매개가 『부활』이라는 점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부활』에서 경찰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기에 형식이 이와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일까. 형식이 영채를 구원하기 위해 도움을 얻으려 경찰서에 들르듯, 네흘류도프는 형무소에 수감된 카츄사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따라 시베리아까지 이동한다. 그는 지사, 소장, 장교, 원로, 경찰 등과 만나고 탄원서를 올리는 등 그녀를 구명하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쓴다. 그 과정에서 네흘류도프는 법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법과 명령을 우선시하면서 민중을 같은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상황을 알게 된다.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면서 오히려 윤리의식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인용문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경찰은 『부활』에서와 같이 그 부정성이 심각한 정도로 드러나진 않는다. 경찰은 평양에 내린 수많은 사람 중 영채를 파악할 도리가 없다는 업무적 성격이 짙은 발언을 할 뿐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장면들을 염두에 둘 때, 겸열을 의식해 직접적 비판을 시도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부활』에서의 경찰을 언급함으로써 총독부의 통치체제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 4. 식민지의 법률 비판과 대안으로서의 ‘심법(心法)’

이광수는 당대 경찰 제도를 치안의 차원에서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도덕과 양심이라는 내적 규율과 긴밀히 관련된 법의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했다. 이와 같은 작가의 법의식은 『부활』의 네흘류도프의 사유와도 접점을 이룬다. 그는 모든

식, 앞의 책, 222-230면.

63) 이광수, 1914.8 「나의 문단 생활 30년: 감사와 참회」 『신인문학』 1, 19면(김진영, 위의 논문, 22-23면에서 재인용).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사물화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든 궁극적 원인을 ‘현실의 법률’에서 찾는다. 그리고 ‘진정한 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은 ‘새로운 율법’을 정초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간다.<sup>64)</sup> 네흘류도프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대안이 하느님의 법과 긴밀한 관련을 보인다는 점을 차치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기초로 한 마음의 회복을 통해 구현되는 법이라는 이상(理想)은 앞서 살펴본 이광수의 도덕과 양심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 요컨대 인간을 사물처럼 여기는 경찰의 시선으로 가득 찬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법’은 인권을 오히려 묵살하는 데 악용되며, 마음속에 새겨진 사랑과 동정이라는 ‘법’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두 ‘법’의 대비가 영채의 삶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이다. 영채가 대동강에 투신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청량사에서 김현수와 배명식에게 겁간을 당해 정조를 유린당했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 대목은 정조를 죽음과 등기의 것으로 여기는 영채의 구시대적 전통 윤리의식이 더 이상 견지될 수 없는 세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영채가 아닌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이 장면에는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영채가 아닌 가해자들의 의식과 그들을 지탄하는 형식의 대조적인 의식 세계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김현수와 배명식은 영채의 정조를 빼앗으려다가 신우선의 부탁으로 그 현장을 급습한 형사에게 포박 당한다.<sup>65)</sup> 근대소설 이전 성리학적 가치가 지배적인 서사 세계 내에서 여주인공의

64) 네흘류도프는 법과 명령에 따른 직무(공무)를 인간에보다 우선시하는 이들을 “상대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상실한 인간”(532면)으로 평가한다. 그는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 준 영원불멸의 절실한 율법은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532면)는 사실을 괴로워하면서 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운 존재로 위치 짓는다. 요컨대, 네흘류도프에게 관리들은 정해진 체계만을 따름에 따라 ‘동정심’과 ‘사랑’을 잊어버린 존재이기에 강도들보다도 두렵다고 생각한다[레프 니꼴라예비치 뜰스또이(이대우 옮김), 2010 『부활 (하)』, 열린책들, 528-534면]. 한편 법학 분야에서 제출된 논의에서, 춘원의 법의식 형성의 기저에 톨스토이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안준형, 앞의 논문: 최종고, 앞의 논문.

65) 김철은 신우선의 청에 형사가 출동하여 체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신우선의 사적인 부탁에 따른 것이라는 오노 나오미의 견해를 고려할 때, 이 대목은 경찰이 인민을 보호하거나 죄의 현장을 포착하는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

장간은 허용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이는 『무정』의 세계가 그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sup>66)</sup> 나아가 이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의 인식 차이는 동시대 현실의 ‘근대’가 어떠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진단과 더불어 그 변화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네는 려염집부인이 남의남즈와밀통함이 죄인줄을알건만은 기성~~그~~흔것은 의례히 아모나희롱~~흐~~는것이 맛당~~흐~~다~~흔~~다 려염집부녀에게는 정절이잇스되 기성에게는 정절 이업~~는~~것이라~~흔~~다 과연그네의~~성~~각~~흐~~노~~바~~는 올타 법률상 기성은~~쇼~~리와~~춤~~으로~~직~~을~~더~~흐~~노~~것이라~~흔~~건만은 기실은 어느~~기~~성~~치~~고 밤마다 소위「손을보」지안이~~흐~~는~~쟈~~가업~~다~~ 그 럴으로 김현수나~~비~~명식의~~성~~각에 기성이라는 계집사~~름~~은 모든~~도~~덕과 모든~~인~~륜을~~버~~셔 난일종 특별~~한~~동~~물~~이라~~흐~~았다 그~~로~~으로 그가~~오~~늘~~져~~녁에~~흔~~일이 결코~~도~~덕이나 량심에 거슬~~이~~는~~는~~ 항~~위~~인~~줄~~로~~는~~~~성~~각~~지~~안~~이~~ 흔~~다~~ 다만~~귀~~찬~~은~~ 법~~률~~이~~란~~것~~이~~잇~~서~~「부녀의~~의~~스~~를~~ 거슬~~이~~고 육~~교~~를~~흔~~것~~을~~ 강간~~죄~~라~~흘~~것~~이~~ 두려울~~\_sun~~이~~었다~~ 그~~로~~으로 그~~네~~가~~만~~일~~이~~자~~리~~를~~버~~셔~~나~~기~~만~~흐~~면~~ 름~~일~~아~~춤~~브~~터~~는~~는~~ 주~~그~~네~~는~~ 아~~모~~죄~~도~~업~~는~~샤~~름~~인~~줄~~로~~알~~것~~이~~라 (40회) (밑줄: 인용자)

김현수와 배명식은, 기생은 여염집 부녀와 달리 정절을 고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채와 동침하는 행위가 도덕과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때 주목을 요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을 평가하는 서술자의 태도이다. 법률상 기생은 소리와 춤만으로 손님을 상대하는데, 그와 다르게 실상은 육교를 안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입장이 틀리지 않다고 진술한다. 이렇듯 김현수와 배명식이 기생을 ‘모든 도덕과 모든 인륜을 벗어난 일종 특별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데는 법률의 규정과 그 의미가 통용되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는 세간의 인식이 근거로 작용한다. 이는 장간죄를 염려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들은 장간죄라는 ‘귀찮은 법률’은 두렵지만,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곧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법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

다. 사적인 부탁이기에 움직이게 된 경찰, 죄를 저질러 일시적으로 포박되더라도 귀족과 학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된다. 요컨대 이 장면에서 경찰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김철, 2005 앞의 책, 501면.

66) 서영채, 앞의 논문, 30면.

실과 더불어 남작과 학감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법보다 우선적인 힘을 발휘하는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실질적으로 죄인이 될 리 없다는 이들의 확신의 배경에 일제 지배하 작위를 얻은 인물의 영향력을 떠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제하 사법제도 내에서 박진사의 억울함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을 떠올릴 때, 당대 법률 체제가 합리적 절차 아래 통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들이 법률이 지닌 가치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한 몰 이해와 달리, 쌍방의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육교를 했기 때문에 강간죄라는 조항에 저촉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다. ‘의사 여부’ 운운하는 데서 나타나듯 영체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목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으로, 영체의 처지와 심정 나아가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근대 문명의 하나인 법률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이비 개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형식의 분노는 이와 같은 사회적 위치에 걸맞지 않은 인격 또는 도덕적 감수성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은 분홍마음으로 고기를 숙인 두사람을 보았다 김현수로 말하면 맛당히 그러한 사람이라 허더라도 소위 교육자라 일컫는 비명식이가 이런 대죄악을 범한 앗음을 보고 더욱 분홍여호였다 형식은 비의 겪으셔며 조롱하는 목소리로

「여보 비형이게 무슨 짓이오? 교육가로 강간이란 말이 원말이오?」 헛 앗다 비명식은 훌말이 업셨다 그러나 리형식이가 왜 이 일에 참견한 눈이 있고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리형식은 상관업는 일에 참견한 눈이 있고 페셜하게도 여겼다 즐기기 강간죄를 범한 앗스니 형식의 포박을 당한 것은 맛당한 거니와 상관업는 리형식에게 칙망을 바를리유야 무엇이랴 헛 앗다 (중략) 비명식은 직접으로 즐기의 리학에 상관되는 일이 아니고는 슬퍼 훌줄도 모르고 괴로워 훌줄도 모르는 사람이라 즐기의 즐식이 칼로 손가락을 죠끔 빙물을 보면 명식은 슬퍼 훌줄을 알지마는 남의 집의 아달이 죽는 것을 보더라도 「참슬 푸웁니다」 헛고 입으로는 남보다 더 간절한 드시 말한 눈더신에 믿음으로 슬퍼 훌줄을 모르는 사람이로다 만일 영조치가 즐기의 누의 동성이거나 뜰이었던들 남이 영치를 강간한 것을 보면 반드시 형식보다 더욱 분을 낸다 칼을 들고 땀비려니와 영치가 누이도 안이오 쓸도 안임으로 그 가강간을 뱗아도 관계 치안 죄를 더라도 관계 치안 타호다 (40회) (밀줄: 인용자)

위의 인용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식과, 김현수와 배명식의 인식의 간극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형식은 특히 교육자인 배명식이 이와 같은 ‘대죄악’을 저지른 데 대해 분노하면서, 그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양심을 지닌 ‘사람’이 되라고 책망한다. 그러나 배명식은 형식의 이와 같은 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강간죄를 저질러 형사의 포박을 당할지언정 아무런 관계없는 형식에게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률상의 죄를 사회적 윤리 도덕의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뭇 다른 두 인물의 태도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는 배명식이 만약 영채가 자신의 누이동생이거나 딸이었다면 더한 분노를 터트렸을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형식의 말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인권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이해된다. 그와 달리 배명식은 오직 자신의 가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서만 의식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의 관점은 이광수의 정육론과도 상통한다. 도덕 감정으로서의 ‘정(情)’은 가족, 이웃, 사회, 국가, 인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집단에 발휘되는 ‘정’이야말로 ‘심법(心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情)의 윤리는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자, 문명을 통해 인류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사랑(愛)’의 감정으로까지 확장되는 개념이다. 자신과 무관한 타인의 처지와 경우에 대해 ‘동정(同情)’을 느끼는 감정적 반응은 인류 문명의 정신 발달과 비례하며,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범위가 편협 할수록 범인이며 정신의 정도가 열등하다.<sup>67)</sup> 이광수의 논설의 어법을 따라 표현한다면, 형식은 ‘정(情)’의 단초를 가지고 있어 인류의 정신문명을 이해할 잠재성을 지닌 인물이라면, 이해관계에 충실한 배명식은 그와 같은 근본적 감정이 부재한 존재이다.

67) 이광수는, ‘범인’은 ‘동정’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자녀가 감기가 들면 슬퍼하고 정성을 다하면서 남의 집 외아들이 죽을 지경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배명식이 영채가 자기 누이동생이거나 딸이라면 남이 영채를 강간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노할 것이나 그렇지 않기에 강간을 당하거나 죽어도 관계치 않다는 서술자의 언술과 상통한다. 외배, 1914.12 「同情」 『청춘』 3, 57-61면.

이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으며 단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인물들을 묘사하는 데에는 당대 실정법이 적용되었던 세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동시대 법률이 개인의 이해에 따라 악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오직 현실만을 규율하는 강제적인 법률에 의존하여 선악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에 자리한 도덕적 인식의 소멸이 촉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68)</sup> 이는 자신의 권리에 힘입어 내일이면 아무런 죄도 없이 방면 될 것임을 자신하는 인물의 태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힘이 있는 자에게 법이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대목은 도덕과 윤리상의 죄(sin)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것과 비례하여 개인의 안위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보다 쉽게 범죄(crime)를 저지르게 되리라는 작가의 판단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기에는 아무리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정비되더라도, 내면에 도덕적 감정이 부재한다면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리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렇듯 이광수의 비판이 향하는 지점은 근대법 자체가 기보다는 정의와 도덕과 같은 가치를 담지 못하고 그와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당대 현실의 법체계라 할 수 있다.

당대 ‘현실의 법’과 ‘이상적 법’의 관계를 식민지화된 조선의 현실과 더욱 관련지어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대단원에 해당하는 삼랑진 수해 장면이다. 앞서 형식의 말과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언급되었던 ‘동정(同情)의 윤리’는, 이 대목에 이르러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 차원에서 현실화된다. 이는 감정의 용화를 통해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선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감정의 사회적 의미를 여실히 보여준다.<sup>69)</sup> ‘네 사람’, ‘세 처녀’ 등을 주어로 공통된 생각과 행동

68) 법학의 흐름에서 볼 때, 국가주의에 입각한 법학의 출현은 신학과 윤리학에서 벗어나 종립화되면서, 국가의 실정법으로서 강제성만을 지닌 법이 되게끔 했다. 메이지 시기 일본이 수용한 서구의 법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적 성격에 잘 들어맞는 것들로 선별적으로 수용되었고, 이는 그 법의 성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철, 2007 『한국 법학의 철학적 기초: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학술정보, 44-45면.

69) 이러한 대목은 선행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다. 그런데 김현주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가족’ 형태라고 했는데(181면), 이러한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동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될수록 인류의 정신적 문명의 소산으로서의 의

을 한다는 술어를 띤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sup>70)</sup> 이들의 물 구경을 하려 가겠다는 호기심은 홍수라는 압도적인 자연 재해에 따른 참상을 실제로 목도하여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사라진다. 인물들의 이와 같은 감정의 변화를 서술자는 개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가지게 되는 공통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sup>71)</sup> 이들은 지식적 차원에서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경험에서 우러난 감정의 발로를 통해 그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된다.<sup>72)</sup>

이와 같이 인물의 행동과 결심이 모두 ‘동정’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경찰을 근거로 총독부 통치에 순응하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을 재고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서사 내에서 수재민 구제가 본격화되는 방편인 자선음악회는 경찰서장의 허가와 원조라는 체계적 절차를 통해 현실화된다. 이는 단순히 당대 법치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 서장이 조선을 식민지로 규율화하려는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재현의 양상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73)</sup> 앞서 『무정』에서 총독부 법제와 이를 행사하는 경

---

미가 심화되며,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를 때 타인을 향한 동정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주, 앞의 책, 175-188면; 손유경, 앞의 책, 75면.

70) 가령 다음과 같은 대목을 들 수 있다.

“네사률이 각々방석을 당고어깔고안자말자소락이가 려관의 힘석집옹을싸린다

‘아이구 쪄집일흔사름들을 엇지희」하고 세쳐녀가일시에 얼굴을 찌푸린다 비눈ࡅࡅ페붓는다 방안은격々호다”(119회) (밑줄: 인용자)

71) 이는 119회, 121회에서 잘 나타난다. 재난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감정은 선형과 영채 사이의 불편함 감정을 단번에 사라지게 하고서 ‘한마음’으로 ‘손을 잡게’ 한다. 재난을 목도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은혜, 2012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재난(catastrophe) 모티프와 공동체의 이상」『한국현대문학연구』 36 참조.

72) “영치와선형은 이문답의뜻을 조세하는모른다 무론조그네아는줄 멋지마는 형식이와병욱이가 아는이만큼절실「切實」하게단단하게알지는못한다 그러나방금눈에보는스실이 그네에게산교훈을쥬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비호지못할것이오 대웅변에서도비호지못할것이 었다” (123회)

73) 당시 경찰은 조선의 ‘근대성’을 뿌리내린다는 미명 아래 새로운 질서를 조선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중앙과 지방, 상부와 하부를 가로지르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규율화 하려는 의도를 관철시켰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세력이다. 조성택, 2015 「일제 강점기 경찰의 역할

찰 존재는 일상생활의 편재(遍在)하는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법에 내포된 근본정신과 가치를 잊어버린 기형적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랑진 수해 장면에서의 경찰은 이와 달리 적극적으로 수재민 구제 방침을 모색하며, ‘불쌍한 동포’를 도와줘야 한다고 연설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에게서 피식민지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구속하려는 의도는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는 음악회를 제안한 병욱의 의견에 감사를 느끼는 인물이다. 형식, 병욱, 영채, 선형이 윤리의식이 고양되고 문명을 배워야겠다는 계몽의 가치를 드높이게 되는 과정은 경찰 서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전개된 체계적인 자선 활동의 무대 속에서 구현된다. 이는 시민을 보호하는 근대법의 취지와 실제 적용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선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병욱이 제도적 절차에 대한 인식을 뚜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서장을 면회한 것은 허가된 음악회가 조직적인 자선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회를 통해 모인 성금을 서장이 맡아 잘 사용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은 절차적인 구제 방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좋은 방법을 취해 수재민을 구제하겠다는 서장의 응답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병욱은 동정이라 는 도덕 감정이 법률과 만나 상호보완을 이룰 때, 공동체 내의 제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심법’에서 출발하고 이를 법률이 뒷받침해줄 때 만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작점이자 기초가 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동정으로 대표되는 도덕 감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이 도덕과 법이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서장의 국적, 음악회에 모인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언어가 모호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sup>74)</sup> 그러나 서장은 일본인이며, 소통의 언어가 일본어일 거라고 추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경찰서장이라는 고위직이 일본인이 맡을 가

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7, 84-85면.

74) 하타노 세츠코, 2008 앞의 책, 387-393면.

능성이 더 크긴 하나, 경찰서장직에 조선인도 오를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sup>75)</sup> 허구적 이야기라는 소설 장르의 특성과 결말부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후반부의 서사 자체가 비현실적일 정도로 낙관적인 분위기를 환기한다는 점에서도 실제 조선인이 경찰서장이 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언어 문제도 마찬가지다. 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승객들 속에 일부 흰옷 입은 삼등객이 섞였다는 부분을 통해 대다수 승객이 일본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서장의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기에 서장이 일본어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어로 노래를 부르리라고 여겨지는 영채의 독창 장면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는 노래의 서글픈 곡조뿐만 아니라 ‘가사’ 때문이라고도 분명히 나타난다.<sup>76)</sup>

이처럼 상충되거나 단일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이질적 장면들은 애초에 이 부분을 현실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비현실적으로 그런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총독부하의 제도적 절차 아래 자선 사업이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이와 같은 전개는 민족적 관계, 언어와 같은 현실적 조건들을 전부 ‘생략’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는 곧 작가가 바라는 소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나타난 비약적 전개로 보인다. 따라서 도덕과 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비현실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역으로 실제 현실에서는 법과 도덕의 이상적으로 만나고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법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이광수는 법률을 비판하고 넘어서는 내면적 규

75) 합방 초기부터 1917년까지 한국인 경무관은 1명이며, 경무부장직(오늘의 道경찰국장)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警視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본인에 비해서 적지만 한국인도 있었다 (안용식, 2008 「일제하 한국인 경찰 연구」『현대사회와 행정』 18, 212면). 일제강점기 ‘경시’는 총경(總警)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직위로는 경찰서장, 부서장, 과장이 있다. 경찰서장에 한국인이 있을 수 있는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정은 가능하다.

76) “십여년련단호목소리는 과연조유조지호았다 바이올린의 고양한곡묘를들을줄모르던 사룹들도 영치의고온목소리에는 취호았다「흐르는두줄눈물뿌릴곳업셔」홀찌에는 일동의눈에는 눈물이도랏다 시방영치가한문으로짓고 형식이가변역호다음에 노리를셋이 합창호았다 그것은집을일코 비에져즌불상흔사룹들을두고 지은것인데 이노래는 듯는사룹에게더욱집 흔감동을주었다 그노리는 이러했다” (122회) 123회로 이어지는 ‘노래’의 가사 또한 일본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준을 세우는 데에 더욱 골몰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에 대한 작가의 깊은 관심은 추상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이기보다는, 이와 같이 총독부 통치하의 식민지 조선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무정』은 조선총독부를 필두로 한 일본 제국의 엄혹한 지배와,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조선의 문명화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광수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이 글은 언론과 출판의 제약이 심한 상황에서 당국의 검열의 눈을 피해, 더군다나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1면에 연재하면서 우회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추적하고자 했다. 특히 1910년대 총독부의 주도 아래 법치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문제의식을 규명한 후, 그에 대한 ‘연속’의 차원에서 『무정』에서 서사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양상을 들여다보았다. 이광수는 근대 문명으로서의 법의 가치와 오랫동안 공동체를 유지해온 불문율로서의 도덕의 힘을 모두 긍정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 통치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적용된 법률은 이 두 항에 내포된 긍정적 함의를 축소 또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광수는 법의 정신과 거리가 먼 총독부를 필두로 한 법률이 집행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의 규범이 되어 줄 ‘정(情)의 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탐색했다.

식민지 시기 작가 중에서 이광수만큼 도덕의 문제에 몰두했던 작가는 드물다. 그러나 특히 『무정』에서 도덕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 유지를 위한 보편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임이 강조된다. ‘이상적인 법’은 사회적 공동성의 차원에서 타인과 공유되는 가치를 통해 정립되고, 그것은 개인의 내면에 자리한 도덕적 정신이 사회에서의 행동으로 현실화될 때 가능하게 된다.<sup>77)</sup> 식민지 현실 속에서

77) 임석진, 2008 「법의 본질,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와 국가에서 법의 역할」, G.W.F 해겔(임

근대법이 정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이광수의 눈에 포착된 법과 도덕이 대치되는 상황은 이와 같은 이상적인 법의 정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에 이르게끔 했다.

『무정』 이후 발표된 소설에서 이광수는 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 그와 대조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정신과 신의를 더욱 강조한다. 『무정』에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는 도덕의 자리가 국가적 차원의 규범인 법과 나란히 설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한 후, 작가는 더욱 전면적으로 개인의 도덕 문제에 집중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맥락에서 『무정』에 이어 발표된 『개척자』에서 도덕의 문제를 그리는 방식은 의미심장하다. 성순은 내면에 자리한 도덕성을 사회에 의미 있는 작용을 만들어 나갈 행동으로 현실화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른 채 죽게 된다. 이러한 인물은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인권에 기초한 근대법의 이상(理想)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작가이자 지식인 이광수가 고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 법과 식민지 통치, 법과 도덕의 관계라는 문제, 작가의 창작에서 지속적으로 견지되었던 고민의 출발이자 뿌리, 그리고 이상(理想)을 담고 있는 소설이 바로 『무정』이라 하겠다.

주제어 : 『무정』, 이광수, 정(情), 동정(同情), 도덕, 근대법, 공동체, 경찰제도, 문명

투고일(2018. 2. 5), 심사시작일(2018. 2. 19), 심사완료일(2018. 3. 5)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Modern Law and the ‘Jung(情)’ in  
Lee Kwang-su’s *Mujung*(無情)

- Focusing on the competition between the government system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the legal consciousness of Lee Kwang-su -

Lee, Haeng-mi \*

In the early modern period Lee Kwang-su was an intellectual and author who strongly insisted on the civilization of Joseon. As part of that, Lee was interested in modern laws that guaranteed individual human rights and autonomy. But the reality that the law was executed under the rule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hard to find the value and spirit of the modern law that Lee expected. Rather,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in the Joseon society has paralyzed the moral feelings that sustained in the community. In this context, Lee focused on ‘Jung(情)’s ethics. Lee emphasized that individuals should start from these moral sentiments and voluntarily form inner rules. It was not embraced by the rule of law formed by the state power, but also created the place of moral norms beyond it.

This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is also evident In *Mujung*(無情). Lee critically represented the reality of the colonial Joseon,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a police system symbolizing state power and a governor - general governed by law. Furthermore, Lee sought to look deep into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In this respect, *Mujung*(無情) is meaningful as a novel which seeks the direction of the community legal system established under the governor-general rule, without giving up the voice of enlightenment for the civilization development of the universal humanity.

**Key Words :** *Mujung*(無情), Lee Kwang-su(李光秀), Jung(情), sympathy(同情),  
morality, modern law, community, police system, civilization

---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